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27
----------	-----

2020. 10. 23.(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0년 10월 5일

다. 회부일자: 2020년 10월 6일

라. 상정일자: 2020년 10월 14일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박승렬)

가. 제안이유

- 본청 및 직속기관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기구와 기구별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 (안 제2조)

1) 지방공무원 총수: 3,336명 → 3,348명 (+12명)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 (안 제4조, 별표3)

- 1) 일반직: 3,015명 → 3,020명 (+5명)
 - 4급: 22명 → 23명 (+1명)
 - 5급이하: 2,976명 → 2,980명 (+4명)
- 2) 교육전문직원: 301명 → 308명 (+7명)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36명 → 38명(+2명)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65명 → 270명 (+5명)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홍만표)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21. 1. 1.자 조직 개편안에 맞추어 지방 공무원을 기존 3,336명에서 3,348명으로 12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은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충원할 예정임.

※ 조례 개정안의 세부 증원 사유

구분	세부내용	증원사유
전문직 (7명)	▶ 4급상당 장학관: 2명 - 유아특수복지과장 - 학생수련원 운영기획부장	1. 유아특수복지과 신설 2. 학생수련원 운영기획과 → 운영기획부로 변경
	▶ 5급상당 장학관: 2명 - 대안교육팀장(학교자치과) - 인문예술교육팀장(미래인재과)	1. 대안교육팀 신설 2. 창의융합팀 분리 → 인문예술교육팀 신설
	▶ 장학사: 3명 - 성인식개선팀, 대안교육팀, 창의융합교육팀	1. 성인식개선팀 신설 2. 대안교육팀 신설 3. 창의융합교육팀 정보교육 업무 담당자 증원
일반직 (5명)	▶ 4급: 1명 -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청주 학교지원국 신설
	▶ 6급 이하: 4명 - 학생지원과 학교폭력전담팀: 2명(8급) - 본청 시설과 : 2명(6급)	1. 학교폭력전담팀 신설 2. 학교신설 업무 이관 (교육지원청 → 본청)

- 본 조례 개정안은 2021. 1. 1.자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336명” 을 “3,348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028명” 을 “3,033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01명” 을 “308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348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20	-			
3급	4		4		
4급	23	1	20	2	
5급 이하 소계	2,980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08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70	-			
별정직 계	7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336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3,028명</u>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 한다)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 <u>301명</u>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3,348명</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u>3,033명</u> ----- 3. ----- ----- : <u>308명</u>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width: 10%;">총계</th> <th style="width: 10%;">도의회 사무처</th> <th style="width: 10%;">본청 (직속기관 포함)</th> <th style="width: 10%;">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th> <th style="width: 10%;">공립 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3,33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교육감</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3,01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4</td> <td></td> <td>4</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22</td> <td>1</td> <td>20</td> <td>1</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2,97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1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 소계</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전문직원 계</td> <td>30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 <td>36</td> <td></td> <td>25</td> <td>11</td> <td></td> </tr> <tr> <td>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 <td>26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 상당</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 상당 이하 소계</td> <td>6</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336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15		-			3급	4		4			4급	22	1	20	1		5급 이하 소계	2,976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01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6		25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65		-			별정직 계	7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width: 10%;">총계</th> <th style="width: 10%;">도의회 사무처</th> <th style="width: 10%;">본청 (직속기관 포함)</th> <th style="width: 10%;">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th> <th style="width: 10%;">공립 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3,34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교육감</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3,02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4</td> <td></td> <td>4</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23</td> <td>1</td> <td>20</td> <td>2</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2,98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1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 소계</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전문직원 계</td> <td>30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 <td>38</td> <td></td> <td>27</td> <td>11</td> <td></td> </tr> <tr> <td>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 <td>27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 상당</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 상당 이하 소계</td> <td>6</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348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20		-			3급	4		4			4급	23	1	20	2		5급 이하 소계	2,980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08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70		-			별정직 계	7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336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15		-																																																																																																																																																																																																										
3급	4		4																																																																																																																																																																																																										
4급	22	1	20	1																																																																																																																																																																																																									
5급 이하 소계	2,976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01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6		25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65		-																																																																																																																																																																																																										
별정직 계	7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348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20		-																																																																																																																																																																																																										
3급	4		4																																																																																																																																																																																																										
4급	23	1	20	2																																																																																																																																																																																																									
5급 이하 소계	2,980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08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70		-																																																																																																																																																																																																										
별정직 계	7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학교지원 강화를 위한 2021. 1. 1.자 본청 및 직속기관 기구 정비와 청주교육지원청 국 신설에 필요한 인력 반영
- 관련근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변경(개정 2020. 4. 7.)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12명(일반직 5명, 교육전문직원 7명) 인건비

3. 관련조문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② ~ ④ 생략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2020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단가 적용
-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인건비 추계		연도별 인건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1. 정규직인건비	1,218,861	1,275,294	1,334,340	1,396,120	1,460,760	5,466,514
가. 일반직 74,256,000원×5명=	371,280	388,470	406,456	425,275	444,965	1,665,166
나. 교육전문직원 121,083,000원×7명=	847,581	886,824	927,884	970,845	1,015,795	3,801,348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의 인상률 적용 (4.63%)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계
세입		1,275,294	1,334,340	1,396,120	1,460,760	5,466,514
보통교부금		1,275,294	1,334,340	1,396,120	1,460,760	5,466,514
세출		1,275,294	1,334,340	1,396,120	1,460,760	5,466,514
정규직인건비		1,275,294	1,334,340	1,396,120	1,460,760	5,466,514
재원조달		1,275,294	1,334,340	1,396,120	1,460,760	5,466,514
의존 재원	소계	1,275,294	1,334,340	1,396,120	1,460,760	5,466,514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275,294	1,334,340	1,396,120	1,460,760	5,466,514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